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69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 : 임광현 · 정성호 · 임오경

진선미 • 박희승 • 박민규

이인영 • 박홍근 • 최기상

황명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혜택을 받은 후 과세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공제가 아닌 자녀에게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공제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1항에 따른 실제 상속받
	은 금액의 증명 절차 및 배우
	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